

의안번호	2202636
의 퇴 인	김형동의원
회 답 일	2024. 07. 31.
추계번호	24D06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안동지원을 승격하여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73억 8,800만원, 2030년 25억 2,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26억 5,200만원(연평균 125억 3,0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연평균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으로의 승격 (안 [별표 1] 등)	27,388	28,014	2,256	2,472	2,522	62,652	12,530

주: 1.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으로의 승격(안 [별표1] 등)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유사사례인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8년의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는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2](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5](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7](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각각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하고, 대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소속인 상주지원·영덕지원 및 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소속으로 변경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2](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5](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7](시·군법원의 관할구역)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안동지원을 승격하여 안동지방법원, 안동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비용을 추계하고, 안동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안동지방검찰청은 현행 안동지청의 청사, 공무원 전입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
 -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대구지방법원에서 담당하던 사건이 감소할 것이므로 현재 대구지방법원의 직원 중 일부가 인구수 비율만큼 재배치되는 것으로 가정
 - 안동지방법원이 신설되면 「검찰청법」 제3조¹⁾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이 설치되어야 함
 - 다만, 안동지방검찰청의 공무원 정원이 76명으로 추정되는데 현행 안동지청 공무원 40명과 대구지방검찰청에 41명²⁾이 전입하고 안동지청 청사³⁾의

1)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2) 현행 안동지원에서 승격되는 안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기존 3개에서 12개로 늘어나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군위군,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이 포함됨. 이 관할구역의 인구수는 2023년 말 기준 60만 3,973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으로 대구지방법원 관할 인구수 대비 14.2%(=60만 3,973명÷426만 3,383명)으로 예상됨. 안동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안동지방검찰청에도 안동지청 관할 수사를 담당하는 대구지방검찰청 공무원 정원 291명(2021년 기준) 중 14.2%가 전입하는 것으로 가정

3)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의 중앙청사 1인당 평균 업무용면적인 29.0㎡인 점을 고려하면, 안동지방검찰청의 공무원 정원 76명을 위한 연면적은 2,204㎡로 추정되는데 안동지청 청사의 연면적은 4,679㎡이므로 증축 또는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본 추계에서는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의 사례를 활용하여 추정
 - 개정안에 따라 안동지방법원 등이 신설될 경우 관할 인구수는 60만 3,973명으로 추정되고 현행 울산가정법원의 관할 인구수(145만 8,783명), 청사의 연면적, 공무원 정원 등을 활용⁴⁾)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공사비와 부대경비, 34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8년 3월부터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청사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신축⁵⁾하는 것으로 가정
 -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각각 246명, 43명⁶⁾이고, 관할 인구수 비율 41.4%⁷⁾를 적용하면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총 120명(각각 102명, 18명)으로 추정
 - 현재 안동지원의 공무원 40명은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에 승계되고 대구지방법원의 공무원 중 46명⁸⁾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 증원 규모는 총 34명(=120명-40명-46명)으로 추정
-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판사가 증원될 수 있으나, 판사의 증원여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판사의 증원은 고려하지 않아 증축 면적 산정과 증원 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⁹⁾

신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4) 각 법원의 관할 인구수는 2023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5) 안동지방법원 설치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 안동지원 청사의 처분수입은 추계에서 제외
- 6) 2021년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한 자료 기준
- 7) 안동지방법원의 관할 인구수는 울산지방법원의 관할 인구수 대비 41.4%(=60만 3,973명÷145만 8,783명)
- 8) 대구지방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324명(2021년 기준)이고 안동지방법원의 관할 인구 수는 대구지방법원의 관할 인구 수 대비 14.2%(=60만 3,973명÷426만 3,383명)
- 9)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기준)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6%	2.2%	2.2%	2.1%	2.1%

-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부터 2년 동안 청사를 신축하고, 2028년부터 법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청사 신축

-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경비
- 개정안에 따라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청사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2026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토지매입비는 7억 900만원
 - 토지매입비는 대지면적, 경북지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보상배율을 곱하여 산출
 -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의 대지면적은 39,471㎡이고 앞서 전제한 관할구역 인구 비율 41.4%를 적용하면,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의 대지면적은 16,341㎡로 추정
 - 2022년 기준 경북지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한국부동산연구원, 개별공시지가 주요 통계 자료)는 14,647원/㎡이고, 최근 3년(2020~2022년) 경북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2.9%를 곱하면 2026년 기준 16,439원/㎡
 - 보상배율은 기획재정부의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의 [별표 1])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2.64배율
 - 따라서, 16,341㎡의 토지매입비용은 2026년 기준 7억 900만원(=16,341×16,439원/㎡×2.64)
-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부대경비는 2026년 266억 7,900만원, 2027년 280억 1,400만원으로 추정
 - 공사비는 청사의 연면적에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유형별 공사비 단가(공공청사 중 유사사례의 2023년 기준 평균 단가 3,007,244원/㎡)를 곱하여

산출하고 2026년과 2027년에 50%씩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의 청사 연면적은 총 35,174㎡이고 앞서 전제한 관할구역 인구 비율 41.4%를 적용하면,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청사의 연면적은 14,562㎡로 추정
- 공사비 단가는 최근 3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5.0% 적용
- 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말하고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공종별 요율¹⁰⁾(설계비: 4.03%, 감리비: 1.0%, 시설부대비: 0.23%)을 앞서 산출한 공사비에 적용

[표 2]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청사 신축 공사비 등: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공사비	25,347	26,614
설계비	1,021	1,073
감리비	253	266
시설부대비	58	61
소계	26,679	28,0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설치 시 증원이 필요한 공무원 수는 34명(각각 29명, 5명)으로 추정되고 직급별 증원 인원은 법원¹¹⁾ 소속 전체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표 3]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설치에 따른 직급별 증원 인원 추정

(단위: 명)

직급	법원의 직급별 비율	증원 인원	
		안동지방법원	안동가정법원
고위공무원단	0.10%	0	0
3급	0.50%	0	0
4급	3.10%	1	0
5급	10.20%	3	1
6급	15.50%	4	1
7급	12.00%	3	1
8급	22.80%	7	1
9급	35.80%	11	1
합 계	100%	29	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업무시설이므로 제2종(보통), 중급 요율 적용

11) 대법원의 '2023년 사법연감'의 법원공무원 정원 통계에 근거함

-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증원하는 경우, 인건비 등은 2028년 22억 5,600만원, 2030년 25억 2,200만원으로 추정
- (보수)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의 각 직급별 증원 인원¹²⁾에 직급별 1인당 보수를 곱하여 산출
 - － 직급별 보수는 대법원의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에 근거하여 봉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
 - － 보수는 2024년 2.5%, 이후에는 최근 3년(2022~2024년) 공무원 보수 평균상승률 1.9% 적용

[표 4] 직급별 1인당 보수 추정: 2023~2029년

(단위: 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4급	9,887	10,134	10,327	10,523	10,723	10,927	11,134	11,346
5급	8,138	8,341	8,500	8,661	8,826	8,994	9,165	9,339
6급	7,001	7,176	7,312	7,451	7,593	7,737	7,884	8,034
7급	6,042	6,193	6,311	6,431	6,553	6,677	6,804	6,933
8급	4,726	4,844	4,936	5,030	5,126	5,223	5,322	5,423
9급	4,087	4,189	4,269	4,350	4,433	4,517	4,603	4,6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 추정: 2028~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안동지방법원	4급	91	111	113
	5급	225	275	280
	6급	258	315	321
	7급	167	204	208
	8급	305	373	380
	9급	414	506	516
	소계	1,460	1,784	1,818
안동가정법원	5급	75	76	78
	6급	64	66	67
	7급	56	57	58
	8급	44	44	45
	9급	38	38	39
	소계	277	281	287

주: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8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추정된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¹²⁾을 곱하여 산출
- (기본경비) 추정된 보수에 2024년 예산 기준 대법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

12) 2028년 13.4%, 2029년 13.5%, 2030년 13.6%

경비 비율 6.2%를 곱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 2028년 한 해에만 자산취득비가 발생하며 공무원 증원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1인당 자산취득비(523만원)를 곱하여 산출

[표 6]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정: 2028~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안동 지방 법원	보수(a)	1,460	1,784	1,818
	기관부담금(=a×요일)	196	241	247
	기본경비(=a×6.2%)	91	111	113
	자산취득비	152	—	—
	소계	1,899	2,136	2,178
안동 가정 법원	보수(b)	277	281	287
	기관부담금(=b×요일)	37	38	39
	기본경비(=b×6.2%)	17	17	18
	자산취득비	26	—	—
	소계	357	336	344
합계		2,256	2,472	2,522

주: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8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안동지원을 승격하여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73억 8,800만원, 2030년 25억 2,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26억 5,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토지매입비	709	—	—	—	—	709
공사비와 부대경비	26,679	28,014	—	—	—	54,693
인건비 등	안동지방법원	—	1,899	2,136	2,178	6,213
	안동가정법원	—	357	336	344	1,037
	소계	—	2,256	2,472	2,522	7,250
합계	27,388	28,014	2,256	2,472	2,522	62,652

주: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8년의 인건비 등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의 공무원 정원,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